Contents

春川農歌

1. 인사말
   02 ... 춘천시농어업회의소 회장 차종원

2.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개념

3. 재해보험
   08 ...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우리조합 자랑
   13 ... 춘천시산림조합편

5. 시장도매인제
   22 ... 농산물 유통 민주화를 위해 시장도매인제 보편화되어야...

6. 농촌인력중개센터
   28 ...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요
   29 ... 인력 수요 및 공급방안 / 사업의 기대효과

7. 귀농귀촌지원센터
   30 ... 운영 계획 / 2021년 사업
   31 ... 교육 내용

8. 춘천시농어업회의소
   32 ... 첫해를 마치며... | 사무국장 진승권
   35 ... 사업 추진 현황
   36 ... 임원, 이사, 대의원 명단
   38 ... 사무국 현황 / 2021년 사업활동 사진
   40 ... 정관

9. 민원분석수수료

농어업회의소는 단체(團體)가 아닌 기구(機構)입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 회장 차종원입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가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회원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농어업회의소가 출범했습니다. 회원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환경에서 더 많은 모임과 더 많은 토론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첫해 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하면서 많은 농업인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적지 않은 분들이 농어업회의소를 기구(機構)가 아닌 단체(團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농정 참여를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 체계인 기구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여러 단체와 농업인 개개인이 함께 참여하여 농정에 관한 어떤 사항도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하는 대의기구(代議機構)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의 지방 농정 참여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 농정 시책에 반영하는 대의(代議) 기능이 주된 목표입니다. 농정파트너로서 지자체와 동등한 관계의 공적 협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장기적으로 농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대의' 기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당장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농정파트너로의 역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농어업회의소가 춘천시 농업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근거로 지금보다 더 많은 회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단체와 농업인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농정파트너로서 춘천시 농업인들을 위한 자문, 연구,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공익적인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춘천시 농어업인의 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인이 주인공입니다"

농어업회의소가 궁금하다?

문답사례

농어업인의 새희망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01.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개념

01. 농어업인단체가 있는데 왜 농어업회의소를 만드나?

- 현재 농어업인단체와 농단협이 있는데 옥상옥이 아닌가?
- 농어업인단체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 농어업회의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관변단체 아닌가?

- 농어업회의소와 농어업인단체는 위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 첫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다. 현재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대규모 단체만 참여하고 농협 조직은 빠져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농민의회' 성격이다.
- 둘째, 농어업회의소는 임의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이다. 농어업인단체는 사단법인이 대부분으로 정부·지자체와 파트너십도 임의적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제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지만 관변단체는 아니다.
- 셋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계 권익대변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필요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농어업인단체는 권익대변 기능은 있지만, 공적 서비스 기능은 하지 않는다.
- 넷째, 농어업인단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다양한 직능·품목 단체와 농협이 농정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므로 위상이 높아진다.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어업인, 전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농어업회의소를 농어업인단체의 '옥상옥' 혹은 '관변단체'로 보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며, 농어업회의소 제도를 잘 못 이해하는 것이다. 상공회의소를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는다.

02. 농어업회의소는 왜 필요한가?

-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기존의 농어업인단체가 더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 첫째,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농정에서 현장과 지역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관(官) 주도의 농정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는 협치(거버넌스)의 대표적 방향성이자 핵심 구호이다.
- 둘째, 농정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장 농어업인과 농어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조율함으로써 정책 탐색비용을 줄이고, 현장감 있는 농어업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 셋째,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농어업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와 농어업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함께 기획-실행-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넷째, 농어업계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농어업인 숫자가 줄고 국민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묻혀 버리기 일쑤이고, 정치적 위상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 다섯째,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이외에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의 영역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농어업회의소는 관(官) 주도의 농정에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데 의미가 있다.

▶ 농어업인은 농정의 '객체'가 아닌 '주인'이어야 한다.

03. 농어업회의소가 공적기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기구'라고 알고있다.
- 그런데 공적기구이고 법적단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농어업회의소는 '민간기구+공적기구'의 위상을 동시에 갖는 매우 독특한 조직이다. 우리 농어업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개념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
- 농어업회의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법률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 농어업회의소는 ① 대륙모델(공법+의무가입제) ② 영미모델(사법+선택가입제) ③ 혼합모델(공법+선택가입제)로 구분한다.
  - 공법(公法)[1]과 사법(私法)[2] 농어업회의소는 위상과 권한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사법(私法) 농어업회의소는 별도 법률 없이 민법 등에 근거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국가가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미국, 영국 등).
- 우리 농어업계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처럼 대륙모델의 '공법(公法)'에 의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엄밀하게는 완전한 대륙모델이 아니라 '혼합모델(공법+선택가입제)'로서 절충안에 해당된다.
  - 참고로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공법(公法)에 의한 의무가입제를 적용받았다(대륙모델, 현재 부분의무가입제 운영).

▶ 농어업회의소는 대표성과 의사결정권한은 농어업계가 행사하고 독립성도 보장받지만,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공적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다.

1) 공법(公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대표적임. 2) 사법(私法)은 국민들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배제하는 것으로 민법과상법이 대표적임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수미

1. 기후위기로 더욱 커지는 농업환경의 불확실성

* 기후위기 속 빈번해지는 재해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증거는 지구온도 상승, 온난화, 빙상 감소, 해수면 상승, 북극해 얼음 감소, 해양 산성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7/14~15)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는 1천년만의 대홍수라 불리울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고, 미국과 캐나다는 전례없는 폭염과 산불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 3,628억 원으로 특히 7~8월 피해가 가장 컸고 태풍과 호우에 대한 피해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 더욱 커지는 농업환경의 위험성으로 농가 경영 위기

2020년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월동작물이 웃자라고 과수 개화기가 빨라져 봄철 저온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여름철에 긴 장마(54일)와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어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발생했다.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는 농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농작물 생육시기인 6월에서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농업재해 발생이 시기와 상관없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주요 농작물 재배가능지가 북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위기를 심화시키는 위협적인 요소라 언급했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기후에 대해 농민들은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이상기후가 과거에 비해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이 더 많이 사용되어 농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학균 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 대책은 시설 복구 및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 농작물재해 대책, 농작물재해보험

재해 예방 · 관리와 관련한 법률은 크게 행정안전부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풍수해보험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작된 정책보험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소멸성 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작물별로 과수, 식량작물, 임산물, 채소, 특작 등으로 구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1999년 발생한 태풍 '올가'를 계기로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사과, 배 두 개 품목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67개 품목(시범사업 포함)을 운영중에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보험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2001년 17.5%에서 2020년 45.0%의 가입률을 보이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농작물재해보험의 쟁점 및 한계

농작물재해보험은 2020년 가입률 45.2%, 가입면적 45만6천ha로 지난 20년간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정책보험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협손해보험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며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였고, 이는 실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외면한 결과를 가져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제한적인 보험대상 품목, 영농작업 상황 미고려, 비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방식, 자연재해에 할증되는 보험료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목별, 지역별 격차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대폭 증가한 2020년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에서는 사과가 가장 가입률(90.25%)이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배(73.48%)가 높게 나왔다. 이처럼 가입률이 높은 품목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품목수가 더 많다. 가입률이 10%도 되지 않는 품목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률(2020년)

구 분	품목별 가입률
가입률50% 이상의 품목	배 73.48%, 사과 90.25%, 당근 93.81%, 밀 56.4%, 벼 54.16%, 메밀 56.91%, 밤 52.22%, 양배추 53.25%, 월동무 68.07%, 인삼 53.76%
가입률10% 미만의 품목	매실 7.54%, 무화과 3.28%, 참다래7.75%, 포도 8.59%, 버섯재배사 3.18%, 고구마 4.14%, 고랭지감자 2.93%, 보리 8.57%, 옥수수 5.52%, 팥 5.19%,복분자 2.49%, 오미자 2.17%, 표고버섯 6.03%, 시금치 8.92%, 쪽파 1.88%, 호박 2.35%, 느타리버섯 4.08%, 오디 6.15%, 조사료 벼 0%, 조사료 옥수수 0%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② 보험대상 품목 제한적, 품종별로도 가입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서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어도 특정품종을 보험대상에서 거절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된 옥수수의 경우 찰옥수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초당옥수수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콩의 경우에는 완두 · 강낭콩 · 녹두 · 땅콩 · 적두 · 동부콩 등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한국농어민신문).

③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ㅇ 보험사업 실시지역이 아니어서 가입 불가

2021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수는 총67개이지만 전국에서 그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두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품목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배추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가입할 수 있는데, 대상 사업지역은 고랭지배추의 경우에는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이며, 월동배추의 경우에는 전남 해남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난해 포항시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연이은 태풍(마이삭, 하이선)으로 1,200평 배추밭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ㅇ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수많은 농민들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는 440,173호인데 이는 전체 농가 100만7천호의 43.7%이다. 전체 농가의 66.3%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채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보호장치 없이 버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74.4%(2019년 기준)이다. 실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8.8%에 불과(대상면적을 기준으로는 38.8%)한 것이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와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현실적이지 않은 평년과실수 산정과 표준가격

올해에도 품목을 막론하고 과수 저온피해가 심각했지만 지난해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가장 실감한 해이기도 했다. 이상저온과 50일이 넘는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사과, 배 등 과실의 수확량이 급감 하였다. 급감한 수확량으로 과수농가의 농업소득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지만 이와 함께 보험가입 금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입수확량에 관련된 가입과실수 산정방식이 불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평년과실수 산정에 급감한 수확량도 포함되어 보험가입 과실이 감소하였다. 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 책정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⑤ 농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하나의 예로 2015년 인천 강화군은 최악가뭄으로 모내기철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가뭄을 겪은 농가가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뭄피해 보상을 신청한 농가에게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게 된다.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자연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양을 말하는데 위 사례는 벼농사 특성상 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상환경으로 농가의 영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⑥ 비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방식과 할증

보험 요율은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로서 보험가입자인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 크기를 결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 요율 산정제 체계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구역별 보험 요율의 문제는 위험의 발생과 실제 보상을 받는 농가가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부 농가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로 얼마전 농식품부는 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할 계획을 발표('21.1.29)하였다.

재해가 발생해 농가에서 일정 수준 보상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다음에 보험료 할증의 부담이 있다. 보험료 할증은 보험요율 산정방식에 따라 시군단위로 일괄 적용된다.

⑦ 민영보험사, 그리고 보험이 갖는 한계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손해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로서 단독으로 사업을 맡고 있어 상품판매, 고객맞춤형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며 손해평가 검증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다양성 등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도 못하고, 정책보험이라는 기능에도 충분히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농업재해에 사회안전망 강화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잠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확산의 위험과 함께 기후변화는 점점 더 우리 삶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나가고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새로운 감염증의 발병, 기후변화의 근본 해결방안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복원해나가는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자연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업은 변화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건강한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이 중심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농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는 농업의 불안전성과 농민들의 소득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예방대책과 피해대책에 대한 국가시스템이 사전에 탄탄히 마련되어야 안심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농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춘천시 농림어업인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1962년 춘성군산림조합을 시작으로 60년간 지역 내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조합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춘천시산림조합은 항상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환원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지역 내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림경영지도 및 기술보급으로 산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피해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복구사업 전담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주 및 임업인 소득증가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임업관련 정책자금 지원,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산림경영지도의 날, 임업인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사랑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춘천시민장학재단 기부금 기탁과 고유명절 맞이 이웃돕기,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장애인단체 물건 우선 구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 농림어업인 여러분!
우리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산림조합장 **김 영 회** 올림

춘천시산림조합 연혁

1949년 산림조합 조직(사단법인)

1962년 춘성군산림조합 설립

1980년 산림법에서 분리 산림조합법 독립제정(1980.1.4. 법률제3231호)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조합장 임명제→간선제)(1989.4.1 법률제4113호)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1996.12.12. 법률제4556호)
춘천시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

1998년 조합 현 청사신축 준공 '98.9.24(상호금융개시 및 임산물직매장 개장)

2000년 산림조합으로 개편(2000년 5월 1일)
춘천시산림조합으로 개칭

2005년 산림조합법개정(조합장 간선제→직선제)

2007년 제15대 김운태 조합장 취임(2007.11.7)

2011년 제16대 김운태 조합장 취임(2011.11.7)

2015년 제17대 김영희 조합장 취임(2015.11.7.)

2019년 제18대 김영희 조합장 취임(2019.3.21.)

춘천시산림조합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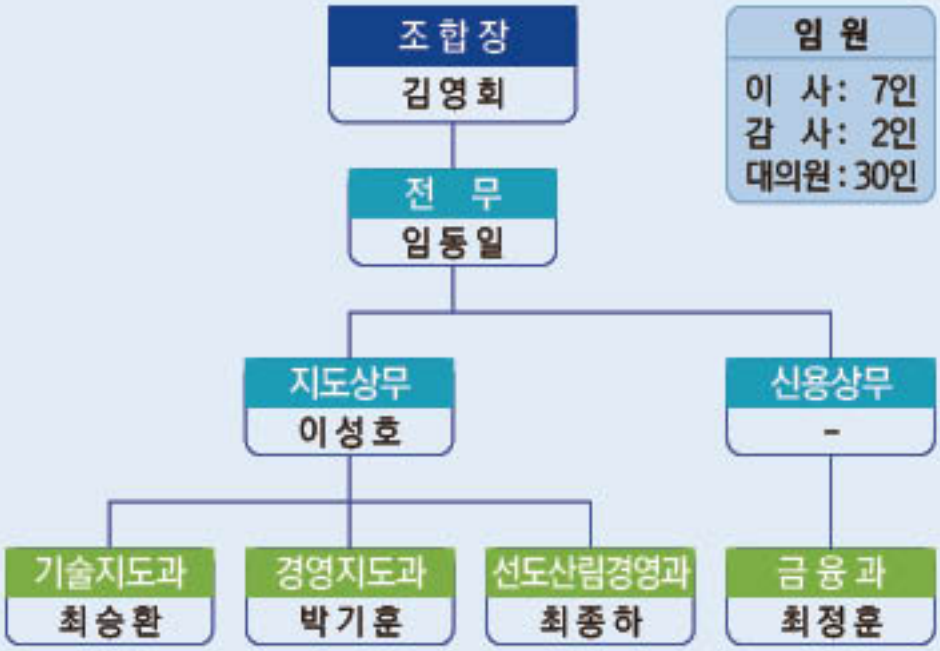

일반사업부문 주요내용

□ 산림경영지도

○ 사유림 경영지도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조합에 배치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지도의 날〉

〈표고종균 접종 지도〉

○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산주의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현지조사〉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

○ 대리경영 제도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로 산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경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속적인 산림경영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산림자원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산12 외 98필지 / 산주 100명
- 사업기간 : 2020년 ~ 2029년(10년간)
- 사업면적 : 775ha (공유림 167ha, 사유림 608ha)
- 사업내용 : 산림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사업 통합 자율경영

○ 추진실적 및 계획

2020년	·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기본계획 수립 · 선도산림경영단지 임도신설 : 0.91km
2021년	· 선도산림경영단지 임도신설 : 1.44km · 선도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 61ha · 선도특화임산물재배단지 조성 : 1식
2022년 (계획)	· 선도산림경영단지 임도신설 : 1.1km · 선도산림경영단지 나무심기 : 3.5ha · 선도산림경영단지 임목수확 : 9.0ha · 선도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 70.77ha · 선도특화임산물재배단지 조성 : 1식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전경〉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주민설명회〉

산림 토목 · 조성 사업

○ 임도사업

임도를 개설함으로서 산림의 집약적 ·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기 설치된 임도 중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곳은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방사업

집중호우 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주변의 가옥과 농경지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토보전 · 수원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휴양림 · 녹색경관 조성사업

국민의 산림문화체험, 레저,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휴양림, 삼림욕장과 생태숲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 등산로 및 숲길조성과 정비등을 통해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림자원조성사업

수목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작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서 우량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산지자원화와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산림보호사업

산불방지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국토경관을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목수확 · 유통 · 기타 사업

○ 임목수확

자원조성사업의 선 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산림자원조성 및 이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이용을 활성화 하여 산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나무전시판매장

산림조합 계통조직과 조합원이 생산한 우량 묘목을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춘천시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나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 : 춘천시 만천리 527-2

○ 버섯종균 공급

품질 좋은 버섯종균을 산주 및 조합원에게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재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 제작한 버섯재배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묘지관리사업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시거나 관내에 거주하시면서도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 묘지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벌초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산림조합상조 서비스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의 주역 산림조합이 수목장 등 친환경 장례문화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상조문화 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SJ산림조합상조를 100% 출자 설립하였습니다.

신용사업부문 주요내용

"산주와 임업인의 행복한 삶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예금혜택 안내

1. 산림조합예금은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산림조합 예탁금은 관련 법률에 의해 상호금융 예금자호보기금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본 조합에 있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2. 조(준)합원 산림조합 예금혜택 (최고 9천만원)

구분	가입대상	혜택	가입한도
조합등예탁금	만 20세 이상	이자소득세 면제 (단 농특세 1.4% 부담)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이자소득세 면제	5천만원
출자금비과세	조합원가입자	배당소득 비과세	1천만원

▶ 산림조합 예금 3천만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 감면
※ 임업인 · 농업인 확인서류 제출시 농특세 감면되어 세금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 산림조합 금융거래시 이용량에 따라 추가배당(이용고배당) 실시
※ 조합 당기손익발생시 매년 이용량에 따른 이용고배당 추가실시

상호금융 대출안내

1.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대출
   - 생활안정자금 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신용 또는 담보(보증서)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 부동산(아파트, 상가, 주택, 전 · 답, 임야 등) 담보대출

2. 임업인 지원 자금
   - 임업종사자 중 농 · 임산물 생산 및 운영목적의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3. 임업인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
   - 산림조합원 정부의 임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위탁운영기관으로 1981년부터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자금난 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장기 · 저리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육성자금, 산양삼생산자금, 국산원자재자금 등

상호금융 활성화 추진실적

2020.05.21. 「변화, 혁신, 새로운 도약」 캠페인 1위

2020.05.21. 2020년 상반기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 그룹 2위

2020.05.21. 신한제휴카드 「상반기 프로모션」 전국 2위

2020.12.15. 2020년 하반기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 그룹 1위

2020.12.17. 2020년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 금상

2021.08.23. 2021년 상반기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평가 금상

강원도민일보

농산물 유통 민주화를 위해 시장도매인제 보편화되어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백혜숙

1. 시장도매인제란 무엇인가요?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 경매거래, 수의거래

경매거래

농가(출하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이 독점으로 수탁하고,
최고가 제시한 중도매인에 의해 가격 결정, 농가(출하자)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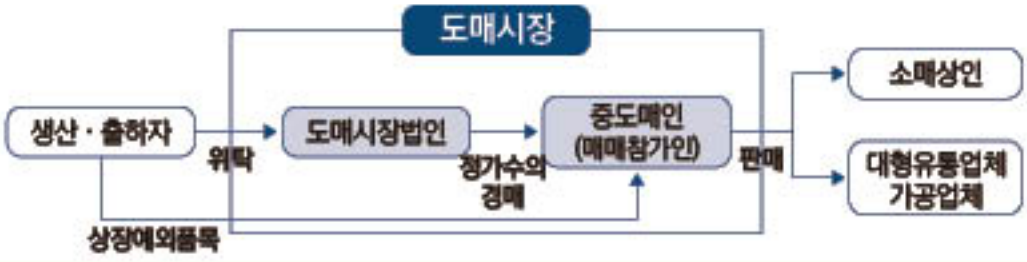

수의거래 (협상거래)

농가(출하자)와 유통인 간에 가격을 협상하여 거래할 수 있어 이해관계 절충 가능,
농가(생산자)가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
※3가지 유형 : 시장도매인, 도매법인 정가수의거래, 중도매인 상장예외거래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는 경매거래와 수의거래(협상거래)가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은 수의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도매상입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비용 절감, 시간 단축, 물류 효율화, 출하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2000년에 도입된 합법적인 거래제도이며,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과 중도매인이 합쳐진 형태로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농가(출하자)-시장도매인-구매자(마트, 전통상인, 외식업자 등) 3단계 유통구조를 가지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명시된 도매시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 거부 금지, 거래관계인의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등 영업활동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2. 35년간 농산물 가격을 결정해온 경매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80년대는 경매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공개되어 그 나름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빅데이터 및 AI 시대입니다. 품목별 생산비 및 경영비를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품목별 전국 거래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35년 전 제도를 고집하며 경매만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KBS 1TV의 '시사기획 창'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를 통해 경매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바 있습니다.

생산자는 가격 결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고, 품질에 따른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며, 같은 날 경매에 오른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경매회사별로 12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은 3초 이내에 경매를 끝내버리는데, 그 비율이 전체의 59.2%에 달합니다. 또한 당일 시장 내 경매 물량이 많이 몰리면 가격이 폭락해 농자재비는커녕 운송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9월에는 양배추 경매가격이 전날 대비 131% 급등하였다가 다음 날 46% 폭락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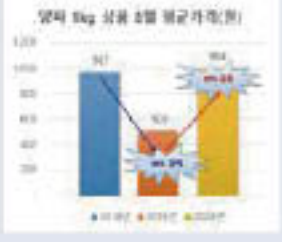

경매제 독점 폐해로 농민들은 시름시름 병들어 가고 있을 때, 경매회사는 법적 보호 아래 4~7%의 경매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경매회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고려제강, 태평양개발, 신라교역, 호반건설, 더코리아홀딩스 사모펀드가 이들 경매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린 결과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가락시장 청과부류 5개 경매회사의 영업이익은 1,700억 원, 현금 배당 수익은 14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을 위한 장려금으로 사용한 돈은 145억 원에 불과합니다.

3. 시장도매인제도를 채택하면 농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출하 선택권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사전 예약거래를 통해 품질에 따라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으며, 시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가격을 협상해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제보다 유통단계가 한 단계 줄어들어 유통비용도 절감됩니다. 고품질 · 친환경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화를 촉진하여 거래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도매상과 생산자가 생산원가가 반영된 사전 계약 거래(6개월~1년 전)를 통해 판매 규모를 미리 확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생산량 조정과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도매권 1공구가 완공되는 2023년에는 전라남도의 사례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주주로 참여하는 '전남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가 닻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시장도매인제를 통한 판매가격이 약정 시 체결한 기준가격(통계청이 매년 공표하는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농산물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 발생 금액의 70%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생산 농가에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4. 현재 시장도매인제도를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있나요?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경매제도와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미국, 유럽도 초기에는 경매제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본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정시 · 정가 · 정품 · 정량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여 경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써 약 9.4%(2018년 기준)만이 경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화훼시장, 일부 협동조합의 신지 경매를 제외하고는 소비지 도매시장은 모두 수의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매방식은 경매를 거치기 위한 추가적인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속한 거래의 어려움이 따르며, 안정적인 거래(가격, 물량)를 원하는 생산자 · 소비자(구매자)들이 수의매매를 통한 거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안법」에 따른 경매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 대구북부시장이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규모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시장이 대표적인 시장도매인제 시장입니다. 60개의 시장도매인 점포가 있고 경매회사는 농협을 포함하여 3곳이 있으며,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품목별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시기에는 대표가격이 합리적으로 발견(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제에 비해 공영도매시장 체류시간이 짧고(3.5~9.5시간에서 2시간으로 감소), 경매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거래가 가능해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생산자와 유통인 간에 긴밀하게 소비지의 소비경향, 생산지의 생육상태 등 유통 관련 정보를 주고받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수월합니다. 공익형 시장도매인, 청년 시장도매인제, 온라인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유통환경이 조성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폐쇄적이고 경직된 거래제도만 운영하는 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곧 농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책이며,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5. 현 정부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꺼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생산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익, 공정,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유통경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는 '포획이론'으로 이야기합니다. 포획이론은 정부가 특정 집단(주로 이익집단)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락시장만큼은 도입이 불가하다"고 내 건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입농산물 비중 증가, 소농 보호에 취약,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되면 기준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매제가 오히려 수입농산물 비중을 높였고, 소농 보호에 취약하며 대규모 출하자에 유리한 가격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가격 하락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락시장 ○○청과의 경우, 중소 출하자(양파 1백톤 미만, 오이 10톤 미만)의 경매단가가 대규모 출하자(1천톤 이상)에 비해 양파는 22.8%, 오이는 무려 39.4%나 낮게 나타나 영세 소농을 보호한다는 경매제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경매가 투명하다고 하지만 사익을 우선하는 도매시장 법인 소속 경매사의 허위거래, 경매가 조작, 운송비 횡령 등 경매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최근 5년 경매사 행정처분 58건, 거래방법 위반 등 위법행위로 인한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187건)하고 있습니다. 경매제의 한계로 좋은 품질의 상품보다는 중·하품 위주로 반입되면서 '경매가격 하락→기준가격 하락→수취가 하락→농업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수의거래 방식입니다. 정가·수의거래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에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경매·입찰에 의한 거래방법과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정부는 2016년 경매회사를 통한 정가·수의 목표를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만일 두 제도의 병행으로 경매가격 하락을 걱정한다면 경매회사에게 수의거래를 권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가락시장에서 경매회사에 의한 수의거래는 되고, 시장도매인에 의한 수의거래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6. 경매를 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을 속이거나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거래물량과 판매가격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별 개별 판매가격을 판매완료 시점(오전 9시)에 공사 및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판매일 경우도 판매가격이 전자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경매회사와 경쟁을 해야 하므로 정산조직에 가격을 속여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농안법」에 따라 정산조직을 설립하여 출하대금 100%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 후 빠르면 판매 당일, 늦어도 7일 이내에 출하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시장도매인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농식품부 인가 정산조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거래보증금 36억 원, 정산조합에서 위험적립금 12억 원을 적립, 총 48억 원 보유, 약 93억 원의 결제준비금 확보)이 책임지고 출하대금을 지급합니다. 정산조합은 서울시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7.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이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 역할을 했는데, 시장도매인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될 수 있을까요?

기준가격은 경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가격이 발견(결정)됩니다. 성주 참외, 안동 사과 등 산지공판장과 온라인 거래에서 기준가격이 발견되고 있으며, 산지공판장 가격이 가락시장 경매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대표시장인 파리 헝지스시장은 경매제가 없음에도 기준가격 형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주요 농산물 200여 품목 가격을 매일 공개하면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와 각 지역 도매시장 등 130여 곳의 가격을 종합하여 최고가와 최저가, 평균을 집계하고 공표합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독자적인 가격형성 기능이 있습니다. 2019년 연구용역 결과, 11개 품목 18개 규격 중 7개 품목 10개 규격에서 시장도매인제 시장과 가락시장 경매제가 서로 가격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도매인 평균거래단가가 가락시장 경매 단가보다 높아 시장도매인 도입 시 기준가격이 높아져 농업보험 적용에 도움이 되고, 영세소농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생산량에 따라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농업보험 및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생산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원가를 기반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협상에 의한 수의매매 계약이 농가의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데 적합한 제도입니다.

8. 농촌의 농민들과 도시의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기후위기에 맞서 피땀을 흘리며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도 농민은 가격결정권이 없습니다. 경매가격이 결정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경매회사가 기술도 자본도 투자할 필요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경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박따박 챙기는 비민주적인 유통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가락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유통 효율성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와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통환경 변화와 유통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 결정을 소비자에서, 그것도 공공기관도 아닌 사기업 경매회사에 의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거래는 유통단계와 물류비용 감소로 생산자 수취 가격이 높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도 가능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가락시장에 직거래도매상(시장도매인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전 세계가 기후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5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입니다. 수의거래 유통체계가 갖춰진 유럽은 2030년까지 농지의 25%를 유기농업화하고, 농지의 10%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환경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또한 농약사용 50% 감량, 비료사용 20% 감축 등을 통해 무너진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려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영도매시장 전반에 시장도매인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입니다. 수의매매로 제값 받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되어야 탄소중립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 및 결정권자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혁신과 유통 민주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가락시장 (공익형)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요

□ 센터명 : 춘천농촌인력중개센터

○ 단체명 : 사단법인춘천시농업회의소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마장길39(과일도매시장 2층)

○ 전화번호 : 033-252-0038

○ 담당자 성명 : 진승권, 박경옥

□ 추진 체계

○ 행정지원 : 춘천시청 미래농업과 주무관 1명

○ 전담기구 : 사단법인춘천시농업회의소 농촌인력중개센터

○ 전문인력 : 2명

○ 운영기간 : 21. 7. ~ 12. (6개월)

○ 업무내용

- 농작업자 구인 · 구직자 모집 알선 · 중개
- 농업인력 수요파악 및 현황조사
- 농업노동력 수급체계 구축 : 작목별, 농작업별, 수요시기별 등

□ 운영실적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혜 농가수	185							29	41	33	51	31	
중개 실적	7,320							832	1378	1352	2101	1657	
근로자 모집인원	433							61	84	81	106	101	

2. 인력 수요 및 공급방안

□ 품목별 인력 수요

구 분	재배면적 (ha)	10a당 필요인원 (명)	인력수요(명)	비 고
벼	1,412	5	7,060	
방울토마토	204	50	10,200	
토마토	140	50	7,000	
복숭아	198	22	4,356	
사과	47	22	1,034	
인삼	217	4	868	
오이	132	50	6,600	
호박	95	45	4,275	
고추	153	20	3,060	
감자	300	10	3,000	
옥수수	440	9	3,960	
콩	332	5	1,660	
합 계	**3,670**	**292**	**53,073**	

3. 사업의 기대효과

○ 고용 노동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 농촌 일손부족 현상 완화
○ 농촌인력중계사업 정착을 통한 고령농, 여성농 등의 농작업 안정성 기여
○ 관내 · 관외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귀농 · 귀촌 활성화 기여
○ 적기 노동력 투입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귀농귀촌 지원센터

1. 운영 계획

□ 운영 필요성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 운영

○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과 함께 귀농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등 원스톱 체계 구축을 통한 춘천시 귀농귀촌 유입 활성화

□ 기관 현황 및 추진체계

소속	성명	담당업무	비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센터장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총괄	
	행정담당	• 귀농귀촌유치지원 행정업무 •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관리	
	교육 · 행사담당	• 귀농귀촌 관련 각종 교육 · 행사 추진 • 귀농귀촌 상담 및 사후관리	
	상담 및 보조	• 귀농귀촌 관련 각종 교육 · 행사 보조 • 귀농귀촌 상담 및 사후관리	

2. 2021년 사업

01.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02.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03.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04. 귀농귀촌 DB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
05. 슬기로운 귀농생활 교육(기본과정)
06. 귀농귀촌마을 화합과 교류 활성화 지원
07.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08. 귀농인 역량강화 프로젝트
09. 귀농귀촌 동네작가 지원
10. 귀농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 및 교육 실시

-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9. 15. ~ 9. 17일 3일간 열린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춘천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상담하였다.
- 지난 9~10월 중 도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슬기로운 귀농생활 기본교육과 귀농귀촌 아카데미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 · 귀촌인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특히 농기계 이용 실습을 포함하여 토마토, 사과, 친환경 쌈채소, 식용장미 등의 체험교육으로 교육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으며, 교육수료 설문조사 결과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2022년에는 교육횟수와 인원을 늘리고 현장 위주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귀농·귀촌인과 마을화합, 주민교류 등 다양한 행사 성과

- 춘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소통증대, 갈등 해소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개 마을에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마을 역사 사진전, 농악, 비누만들기, 소나무숲 조성,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귀농귀촌인과 주민 사이에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홍보

-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춘천으로 이주 정착하기 원하는 귀농인, 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지난 11월 말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원정책, 정보제공, 교육과 더불어 귀농 성공 사례도 공유하여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의 첫 해를 마치며.....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진 승 권

2021년도 저물어 간다.

무언가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른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될 때 춘천시농어업회의소가 창립되었다. 창립을 준비한 지 2년만이다. 2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지금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뒤를 돌아본다. 작게는 하루를 크게는 인생을 반추한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의 뒤를 보면 잘한 점도 잘못한 점도 보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그 공과를 토대로 디딤돌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첫 디딤돌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춘천시 농어업회의소는 2021년 4월 2일 창립 했다. 6월 2일 등기를 신청하고 6월 11일 법인을 설립하였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시작하여 2년여 만이다. 농업인들에게 농어업회의소란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 회원가입 설득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창립이 늦어 4월 22일 직원 공개 채용을 마치고 등기 신청 등 서류 작업을 일찍 끝낼 예정이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시급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서류를 담당한 법무사에서 크레임이 걸렸다.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지 담당 사무장은 항상 출장이었으며 우리 등록서류는 뒷전이었다. 강원도청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서류 검토를 약속했지만 법인 서류는 법무사에 계류 중이었다. 계속된 재촉으로 어렵게 서류를 받아 직접 임원분들의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 그렇게 어렵사리 5월 24일 도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

허가증을 받고도 3주가 다 된 6월 11일 법인 설립을 마쳤으니 정말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졌다. 시작도 하기 전에 체력을 다 소진한 느낌이었다.

늦은 법인 설립은 나와 사무장의 마음을 바쁘게 했다. 1년간 해야 할 사업을 6개월에 끝내야 하니 할 일이 태산이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 일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병행해야 해서 마음은 더 급해졌다. 어떤 분은 농어업회의소에서 왜 농촌인력중개센터 일을 같이 하냐고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어업회의소법이 없어 춘천시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체로 걷는 회원 회비로는 한사람 인건비 정도여서 농촌인력중개센터에 편성된 인건비를 보조 받기 위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다.

비단 이것은 우리 춘천시농어업회의소만의 일은 아니다. 거창군농어업회의소 등 여러 곳에서 농어업회의소 업무와 농촌인력중개센터 일을 병행하고 있다.

2011년 전북 진안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 되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항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입법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여하튼 바쁜 마음에도 법인설립 기간 동안 평창을 두 번이나 다녀오며 농어업회의소 일을 배워온 것이 큰 힘이 되었다. 10년간 농어업회의소 활동을 한 평창은 확실히 체계적이었다.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인 평창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다.

6월 중순 남산면을 시작으로 매일 읍면순회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금 말하지만 당시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600여명 정도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8개읍면은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면 간담회를 앞두고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결국 서면, 북산, 신사우동 3개 지역은 간담회를 갖지 못했다. 자금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서면, 북산면, 동지역 회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2022년도 읍면순회간담회는 서면, 북산면, 동지역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읍면순회간담회가 끝나면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으로 바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월 초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을넘어 위원회를 진행하기는 너무 조심스러웠다.
어쩔 수 없이 분과위원회는 7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농촌인력중개를 위해 면 지역으로 홍보를 다녔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농가마다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인건비가 대폭 올랐지만 사람이 없었다.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농가는 많았지만 정작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수급 불균형이 심각했다. 인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농가를 볼 때마다 참 난감하고 걱정스러웠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인력난이 해소 되고 안정을 찾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회비 CMS(자동이체)를 신청했다. 통장을 개설하고 서류를 보내고 실사받고 금융결제원의 인가에 CMS(자동이체) 등록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CMS(자동이체) 신청이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 어쨌든 모든 과정을 거쳐 회원분들의 회비를 CMS(자동이체) 신청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다. 회비를 CMS(자동이체) 신청하자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분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탈퇴하겠다는 분들이 백명이 넘었다. 처음 회원가입을 하고 실제 회비를 납부하기까지 2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다 보니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신지 모르는 분도 계셨다.

처음에는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탈퇴를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800명이었던 회원이 순식간에 700명이 되었다. 다행히 농어민수당을 받을 때 농협마다 회원가입서를 가져다 놓아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50여명이 되어 현재 7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코로나도 주춤하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읍면순회간담회에서 올라온 67건의 안건을 11개 분과별로 나눠 토론하고 최종 22건의 농정건의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였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업정책협의회를 통하여 22건의 건의사항 중 반영 12건, 검토 4건, 기추진 2건, 미반영 4건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롤모델인 평창의 건의사항 반영률이 처음 5~10%였다는 점을 감안 하면 첫 성적표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아쉽다면 처음이다 보니 건의사항 대부분이 보조사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회원분들이 또 농어업회의소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농어업회의소의 사전적 의미를 따지자면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파트너로서 민관협치 농정을 실현하며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대의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농업인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농어업'에 관하여 '회의'하는 '소(모임)'이라고 설명한다. 1년 내내 회의하는 모임말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농어업회의소의 기본은 읍면순회간담회, 분과위원회, 농어업정책협의회 이 3가지의 실행 여부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의견을 모아내고 거기서 정제된 중론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농어업회의소가 함께 책임감 있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농어업회의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올해 기본은 해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간담회를 끝낼 수 있게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이사님, 대의원분들 그리고 회원여러분 덕분이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이제 첫발을 디뎠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다. 현재 농업 환경을 보면 더욱 그렇다. 농업을 성공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기후일 것이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는 옛말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후가 일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농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어쨌든 미래는 농업이기 때문이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건 아마도 우리 자신일 것이다.
모든 농업인이 잘살고 행복한 그날까지...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사업 추진 현황 (10월말현재)

날짜	세부내용
4월 2일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창립
6월 2일	법인 등기
6월 11일	법인설립(고유번호등록)
6월 16일	읍면순회간담회(남면)
6월 17일	읍면순회간담회(동면)
6월 18일	읍면순회간담회(남산면)
6월 21일	읍면순회간담회(사북면)
6월 22일	읍면순회간담회(신북읍)
6월 23일	읍면순회간담회(동산면)
6월 24일	읍면순회간담회(신동면)
6월 25일	읍면순회간담회(동내면)
6월 26일	회원CMS등록
7월 1일	임원 및 실무진 역량강화교육(전국회의)
7월 1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7월 8일	실무진 역량강화교육(전국회의)
7월 21일	분과위원회(농업정책분과)
7월 22일	분과위원회(산림분과)
7월 23일	분과위원회(여성분과)
7월 26일	분과위원회(청년문화분과)
7월 27일	분과위원회(친환경분과)
7월 28일	분과위원회(과수분과)
8월 4일	분과위원회(원예2분과)
8월 4일	분과위원회(원예1분과)
8월 5일	분과위원회(식량분과)

날짜	세부내용
8월 5일	분과위원회(가공유통분과)
8월 6일	분과위원회(축산분과)
8월 11일	임원회의
8월 13일	운영위원회
8월 24일	조합장간담회
8월 30일	농어업정책협의회
8월 31일	시의원간담회
9월 3일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9월 9일	제2차 이사회
9월 10일	분과위원회(친환경분과)
9월 11일	분과위원회(축산분과)
9월 12일	분과위원회(여성분과)
9월 13일	실무자역량강화 교육(전국회의)
9월 15일	시장님간담회
10월 5일	운영위원회
10월 6일	실무자역량강화 교육(전국회의)
10월 14일	운영위원회
10월 19일	실무자간담회
10월 21일	민관협치 현장토론회(평창)
10월 26일	단체임원 간담회
10월 27일	실무자역량강화 교육(전국회의)
10월 28일	이사,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임원, 이사, 대의원 명단

ㅇ 임원 : 5명

회 장	차종원
부회장	김남진
	김길수
감 사	남궁찬
	신수현

ㅇ 이사 : 33명

단체이사	
농촌지도자	최병오
농업경영인	조한천
생활개선회	변옥철
여성농업인	박금순
전농농민회	김덕수
품목연합회	김길수
친환경	지찬주
강원한우	이강섭
한우협회	우문수
쌀전업농	이원근
복숭아연합	안문헌
조사료연합	이승열
4H연합회	이범준

지역이사	
신북읍	이재환
동면	박영철
동산면	정종식
신동면	심청섭
동내면	지무현
남면	김일수
남산면	신경철
서면	홍종성
사북면	김석포
북산면	박영철

특별이사	
춘천시지부	윤용문
신북농협	김재호
춘천농협	임태환
춘천강동농협	윤흥래
동춘천농협	김남진
서춘천농협	김용종
남산농협	한근수
춘천철원농협	이중호
산림조합	김영회

○ 대의원 86명

지역대의원(47명)			
남 면	위재학	서 면	김선복, 송찬예, 홍창현,
남산면	이창규, 이선형, 최승도, 정재학, 장옥순	시내권	이춘수, 김영환, 이승규, 김주현
동 면	허남호, 김강림, 김은실, 안재복, 윤진수	신동면	이호복, 유연선, 김화남, 안성환
동내면	권흥복, 박명근, 강인순, 박천성, 원호근, 선주영	신북읍	홍경래, 한광수, 황석영, 현기수, 지정민, 함동훈
동산면	정상의, 고종범, 이옥철, 김경성, 이재황	북산면	김원섭, 지미선, 박준서
사북면	김봉주, 장광재, 김경순, 이예열, 길대수		

단체대의원(30명)		
농촌지도자	장규영	양찬식
농업경영인	김덕만	박경호
생활개선회	김옥선	김성자
여성농업인	최근숙	김옥분
전농농민회	강범용	오흥삼
품목연합회	김대림	김진산
친환경	박현배	정재권
강원한우	남궁관	반종열
한우협회	신길선	윤선근
쌀전업농	이정한	신정현
복숭아연합	김경림	김진성
조사료연합	장백호	송용규
4H연합회	전성한	변희일
농민한우유통	김희국	
농촌체험휴양	홍성수	
춘천양봉	김신림	
안삼작목반	서정권	

특별대의원(9명)	
춘천시지부	장영선
신북농협	홍성호
동춘천농협	박일순
강동농협	이고성
서춘천농협	김정운
춘천농협	권혁진
남산농협	이현성
춘천철원농협	김재호
산림조합	임동일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사무국 현황

소속	성명	담당업무	비고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진승권 (사무국장)	•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실무 업무 총괄 • 농업인 교육 및 정책 토론 기획 · 운영	
	박경옥 (사무장)	• 춘천시농어업회의소 행정업무 지원 • 회원관리 및 회계, 지출 관리	
농촌인력 중개센터	진승권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총괄	
	박경옥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센터장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총괄	
	행정담당	• 귀농귀촌유치지원 행정업무 •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관리	
	교육 · 행사담당	• 귀농귀촌 관련 각종 교육 · 행사 추진 • 귀농귀촌 상담 및 사후관리	
	상담 및 보조	• 귀농귀촌 관련 각종 교육 · 행사 보조 • 귀농귀촌 상담 및 사후관리	

2021년 사업활동 사진

창립기념일

읍면순회간담회(사북면)

읍면순회간담회(동면)

2021년 사업활동 사진

읍면순회간담회(동내면)

분과위원회(여성)

분과위원회(과수)

읍면순회간담회(신동면)

단체실무자간담회

제2차 이사회

운영위원회

농어업정책협의회

회원교육

단체임원간담회

조합장간담회

시장간담회

시의원간담회

귀농귀촌지원센터 협약식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사단법인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이하 "본회의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소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마장길 39, 2층 (사농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의소는 춘천시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 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촌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의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 연구
3. 농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 시행
4. 농업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간행
5. 농업과 귀농 · 귀촌에 관한 지도 · 상담 · 교육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 · 알선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 박람회 · 전시회 등의 개최 · 알선
9. 농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을 위한 사업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구성원간 수익배분은 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1. 개인회원 :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
2. 단체회원 :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1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3. 특별회원 : 회의소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지부 또는 지회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 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나 단체로 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 종류별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 월 2,500원 (연 30,000원)
2. 단체회원 : 연 200,000원 (직능단체 및 품목단체), 연 100,000원 (직능단체 및 품목단체 외 회원 30명 이상), 연50,000원 (회원 30명 미만)

3. 특별회원 : 연 300만원(농협시지부), 연 100만원(농,축,산림조합)
4. 준회원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회비의 납부는 3월 이내에 지정계좌에 이체 또는 사무국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영수증을 발부하며, 매월 CMS 자동이체로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가입)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회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절차는 최소한의 확인절차 등으로 사무국에서 우선 갈음할 수 있다.
② 본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회원가입절차, 회비의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 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 또는 기타 본 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개회일 10일전까지 대상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 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총회에 의해 해체(해산)한 때
3. 사망, 행방불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때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1절 총회

제12조(회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갈음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문별 단체 대표의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부문별 단체 대표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전에 회의의 목적 ·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단, 회장은 회원 전체 투표로 선출한다)
4. 임원의 해임
5. 회원의 제명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설치 및 해체의 건
9. 회의소 해체(해산)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의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정한 회원 5인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19조(대의원회)

① 회의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의 대의원 수는 100명 이하로 하고, 읍면지역 대의원 50% 이상, 단체회원 대의원 40% 이하, 특별회원 대의원 10% 이하로 구성하며, 종류별 대의원의 배정은 표와 같다.

대의원의 종류	대의원의 배정 등
읍면동지역 대의원 (50%이상)	① 읍면동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② 읍면동별 대의원은 최대 6명, 최소 1명 ③ 읍면동별 선거 또는 합의로 추대
단체회원 대의원 (40%이하)	① 직능단체 및 품목단체는 2명, 이외 단체는 1명씩 배정 ② 단체별 대의원은 최대 2명 ③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단체가 연합을 통해 대의원 배정 가능 ④ 배정받은 대의원 수대로 단체 또는 단체 간 연합에서 합의하여 추대
특별회원대의원 (10%이하)	① 특별회원 간 합의하여 추대

④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한다.
⑤ 단체회원 대의원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대의원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① 읍면동지역 대의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합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 대의원은 해당 단체에서 합의추대 방식을 적용하되 농업인 단체 간에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추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된 의석을 공석으로 둔다.
③ 특별회원 대의원은 특별회원 기관 간에 협의하여 추대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단체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임기와 함께하며, 해당기관에서 승계한다.
⑤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임원

제21조(임원의 구성)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분과위원회 위원장 : 11인
4. 이사 : 35인 내외. 단,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5. 감사 : 2인

②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에 한하여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소의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면한다. 단, 회장은 전체 회원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거나 합의 추대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은 이사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합의 추대로 선출한다.

③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전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하며, 회장의 직위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한다.

④ 회장 이외의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을 선출할 시에는 춘천시 농업회의소 임원 선거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임기와 연동한다.

④ 단체회원의 보궐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해당단체의 임기와 연동한다.

제24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임원이 자진 사퇴한 때
2. 임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때
3.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 한 때
4. 대의원 중 특별회원 대표가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소를 대표하고, 회의소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슈 또는 이해갈등 해소 및 조정 등의 지역현안을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심층 논의 등을 통해 회의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제26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지역대표이사 11인, 농업인 단체 이사 13인, 특별회원이사 9인 등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대신한다.

③ 단체회원 대표 이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6.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3명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4절 감사

제31조 (구성 및 기능)
①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연말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시 감사는 감사 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절 자문위원

제32조(자문위원) ①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관내에 거주하거나 지역출신인 농업계 원로, 농업관련 전문가, 구역 내 회의소 관련기관 임직원, 외부전문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춘천시, 관내 농림수산식품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제33조(임기와 역할)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의 회의소 임원들의 잔여 임기와 같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은 총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소의 의결사항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 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회의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6절 분과위원회

제34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특성, 각종 중요 현안 등 전문적인 지식과 토론 등이 필요한 이슈 등은 사전 심층 논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대안제시 및 조정자 역할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농업정책, 식량, 원예1, 원예2, 과수, 축산, 친환경, 가공유통, 여성, 산림, 청년문화 등 총 11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의소의 모든 대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회의소 대의원수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와 분과위원들이 협의하여 해당 분야 종사 및 전문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35조(소집 및 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분과 위원 삼분의 일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제14조를 준용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회의소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신한다.

사단법인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정관

제 4 장 읍·면 지회

제37조(조직) 춘천시농업회의소 회원으로 읍·면 지회를 읍·면 지역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할 수 있다.

제38조(역할) ① 춘천시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회원 확대와 시 회의소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읍·면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과 현실에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여 시 회의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춘천시 농업발전 및 농업회의소를 위한 사업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지원) ① 읍·면 지회가 있는 경우 회원 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읍·면 지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업발전을 위한 자료제공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면 지역에서 요청 하는 사업 중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0조(임원) ① 읍·면 지회 회장은 시 회의소 이사가 되며 부회장, 총무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읍·면 대의원은 시 대의원수의 50%이상이므로 읍·면 지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 회의소의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상근직으로서 사무국장과 그 외 직원들로 구성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이 가능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회장이 선임 또는 공모를 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42조(사업연도) 본 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재정) 본 회의소의 재정은 회비·기부금·출연금, 보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제44조(의결권 등의 정지) ① 본 회의소는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그 체납기간 중 총회 및 기타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이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4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을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8조(벌칙) ① 회의소는 회원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회의소의 위신을 손상한 자 또는 부정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할 수 있다.
② 벌칙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소의 임원은 그 직을 면직하고, 임원선임 권리를 결정한 날부터 5년간 제한 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형위자는 제명한다.

제49조(해체 또는 해산) 본 회의소의 해체(해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
토양, 비료, 퇴비 등의 분석 의뢰 이렇게 하세요!!!

담당부서 : 강원도농업기술원 총무과 / 환경농업연구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처리절차 :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분석 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통지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 우편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
※ 농업인으로 확인(신청시 농업인확인서 제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민원분석 수수료

종류	분석항목		단가	수수료
토양(8항목)	중금속(8종)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각 16,000	128,000
퇴비(16항목)	수분 유기물 중금속 8종 O157(대장균) 살모넬라 질 소 NaCl(염분) 염산불용해물 부숙도		7,500 14,300 128,000(각16,000) 41,690 40,500 14,300 16,000 16,000 43,800(콤팩) 81,400(슬비타)	322,090(콤팩) 359,690(슬비타)
퇴비원료(11항목) 슬러지(폐수처리오니)	유기물 중금속 8종 수분 AI(알루마늄)		14,300 128,000(각16,000) 7,500 16,000	165,800 (중금속8종 128,000)
퇴비화	돈분	함수율 구리 아연 부숙도	7,500 16,000 16,000 43,800(콤팩) 81,400(슬비타)	83,300(콤팩) 120,900(슬비타)
	우분	함수율 염분 부숙도	7,500 16,000 43,800(콤팩) 81,400(슬비타)	
액비화 (돈뇨, 우뇨 동일)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액비부숙도		7,500 16,000 16,000 16,000 55,800	

분석수수료 안내서

친환경 및 GAP 인증 토양분석	
중금속 8종 (항목당 16,000)	128,000

친환경 및 GAP 인증 토양분석	
수분함량	7,500
유기물	14,300
중금속 8종	128,000
O157(대장균)	41,690
살모넬라	40,500
질 소	14,300
NaCl(염분)	16,000
부숙도(솔비타)	81,400
부숙도(종자발아법)	91,100
부숙도(콤백)	43,800
부숙도(엑비)	55,800
염산불용해물	16,000
알루미늄	16,000

퇴비화		
돈분	함수율	7,500
	구리	16,000
	아연	16,000
	부숙도(콤백)	43,800
	부숙도(솔비타)	81,400
우분	함수율	7,500
	염분	16,000
	부숙도(콤백)	43,800
	부숙도(솔비타)	81,400

수질	
pH	
질산성질소	11,600
염소이온	8,500
인산염인	
카드뮴	
비소	
시안	16,400
수은	
아연	
구리	
납	
망간	
니켈	
철	
황산	8,500
나트륨	8,500
염소	8,500
COD	8,500
BOD	
부유물질	
용존산소	
총인	
총질소	8,500
암모니아성질소	22,400

토양	
토성	13,500
질소	9,900
인산	9,900
칼륨	9,900
칼슘	9,900
고토	9,900
나트륨	9,900
pH	9,900
EC	9,900
유기물	21,600
유효규산	30,200
석회소요량	17,000
암모늄태 질소	20,500
질산태 질소	22,900
카드뮴	11,700
비소	11,700
납	11,700
수은	11,700
니켈	11,700
구리	11,700
아연	11,700
크롬	11,700

식물체	
질소	10,500
인산	10,500
칼륨	10,500
규산	10,500
염록소	6,300

비료		
주성분	질소	14,300
	인산	14,300
	가리(칼리)	14,300
	고토	14,300
	망간	14,300
	아연	14,300
	동	14,300
	붕소	14,300
	철	14,300
	규산	14,300
	몰리브덴	14,300
	알칼리분	14,300
	유기물	14,300
	칼슘	14,300
유해성분	황청산화물	16,000
	설파민산	16,000
	아질산	16,000
	카드뮴	16,000
	비소	16,000
	납	16,000
	수은	16,000
	크롬	16,000
	염산불용해물	16,000
	니켈	16,000
	구리	16,000
	티탄	16,000
	아연	16,000
	염분	16,000
	염소	16,000
	뷰렛태질소	16,000
	아황산	16,000
	알루미늄	16,000
	유기물/질소의 비	28,600
	수분	14,900
	살모넬라	40,500
	O157	41,690
	부숙도(솔비타)	81,400

LS엠트론

"급이 다른 74마력 트랙터의 탄생"

국내최초! 국내유일! 70마력급 파워시프트

XP7074 NEW

- 요소수가 필요없는 **이태리 명품 FPT 엔진** 장착
- **손끝으로 가볍게 전후진** 조작하는 파워셔틀
- 세계최초! **전동식 파워시프트** 적용
- 국내최초! **스마트키 (원격시동 / 작업기 승하강)** 적용
- **동급 최저 소음 / 진동**으로 안락한 작업 환경 제공

결로 잡는 급유 시스템

편리한 주유!

급유시스템의 혁명!!

연료를 안전하게 이동하여 사용처별 용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고안 설계된 시스템으로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제품.

안전한 보관!

수분 NO!

빠르다!
편하다!
안전하다!

- 본체:특수 폴리에틸렌 재질
- AC 전원 구동 펌프
- 자동센서 주유 노즐(연료 주입 시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면 자동 스톱 되는 센서형 노즐)
- 10미터 특수고무 주유 호스(980ℓ모델 한정)
- 탱크 내 연료 잔량 측정 게이지
- 안전한 보관을 위한 개폐시스템
- 유증기 배출 환기 시스템

D-400(AC)-HT

D-980(AC)-HT

LS엠트론 신춘천대리점 / 태광관리기 춘천대리점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날들에 함께 하겠습니다!"

취급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주유기, 건주기, 탈고기, 풍구, 각종 보조 농기계 등

강원농업기계(춘천시 영서로 2945) / 대표 윤 택 구

상담전화 : 010-9983-6911, 033) 242-6911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이 름		휴대전화	
주 소			
영 농 현 황	□ 논 ㎡	□ 시설하우스 ㎡	
	□ 밭 ㎡	□ 내수면어업	
	□ 과원 · 산림 ㎡	□ 가축(축종)	
예 금 주		생년월일	
약정금액	연 삼만원(30,000원)	출금은행	농 · 축협
계좌번호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세요.(사무국장 : 진승권 / 010-5773-7572, 사무장 : 박경욱 / 010-8723-8323)

문의 : 033-252-0038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상기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년 월 일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귀중

신청인 : (인)